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3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민병덕 · 김문수
허성무 · 황명선 · 최혁진
박 정 · 박홍배 · 김우영
박정현 · 이광희 · 김준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,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·교통·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98조제2항 단서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구 70만 이상인 시(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 이를
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제2항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단서 중 “본다.”를 “보고, 인구 70만 이상인 시(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.”로 한다.

② 법률 제21740호 특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대도시를”을 “대도시(다만,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구

7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다)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